

# 안전관리담당임원의 역할

(본고는 지난 5월 29일에 있었던 건설재해예방을 위한 조찬회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임)  
- 편집자註 -

## 1. 건설재해의 발생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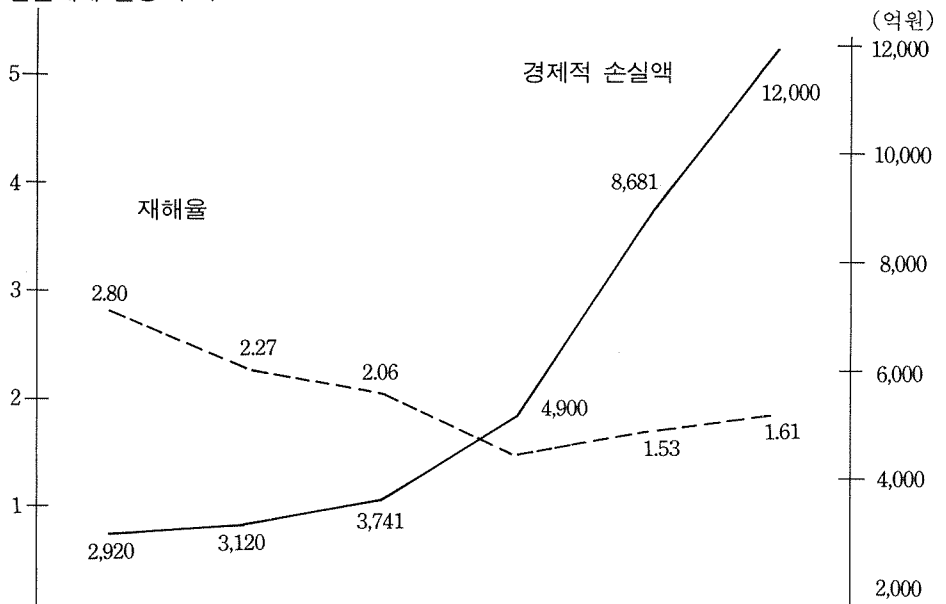
○ '91년 건설업의 재해현황을 보면

- 총 재해자 42,302명, 재해율 1.61을 기록.  
(재해자 14%, 재해율 4.6% 증가)
- 특히 사망재해수가 급증(673명→801명,

19% 증가)

- 건설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1조 2천여억원으로 추정(전년대비 38% 증가)
- 건설재해 증가 추세는 금년 1/4분기에도 지속

\* 건설재해 발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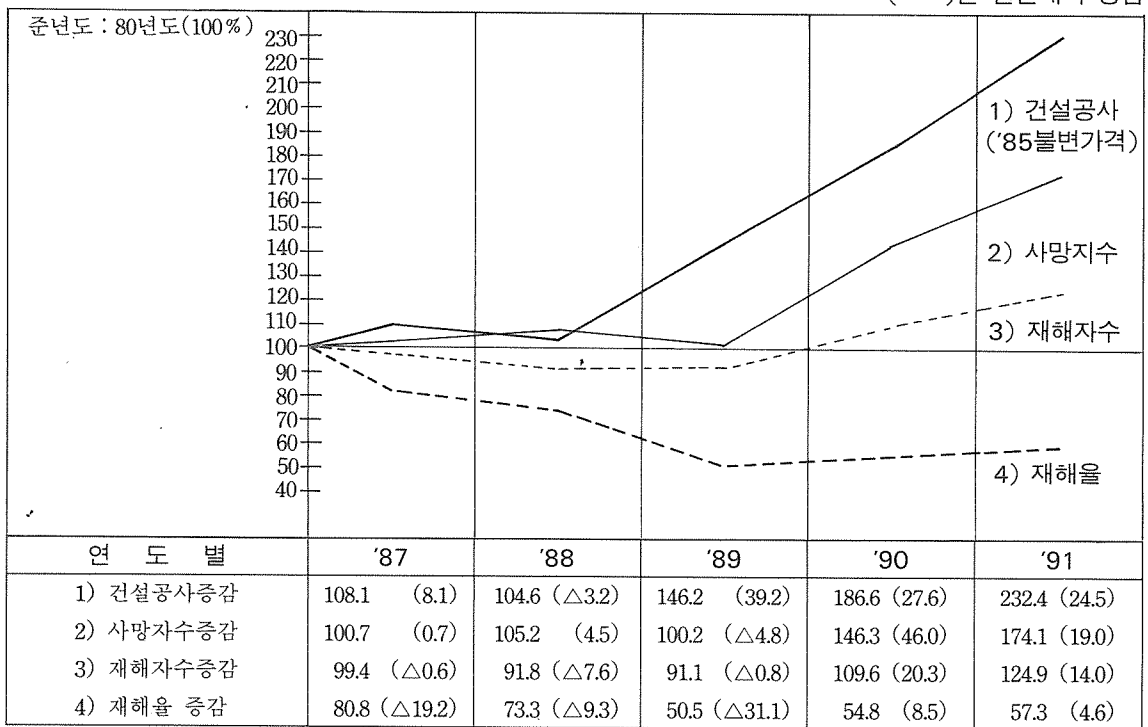
연도별	'86	'87	'88	'89	'90	'91	
근로자수	1,206	1,480	1,506	2,175	2,412	2,627	(천명)
재해자수	33,865	33,646	31,076	30,845	37,102	42,302	
사망자수	460	463	484	461	673	801	
경제적손실액	2,920	3,120	3,741	4,900	8,681	12,000	(억원)

- '91년 하반기부터 건설경기는 다소 진정 (신규 발주 억제등)
- 기발주공사의 본격 시행(유해·위험공종 진행)
- 대규모 사회기반 시설의 착공 등으로 중대재해 발생 여건은 오히려 확대

- 건설재해로 인한 피해는 가시적인 직·간접손실과 함께 건설업의 질적 저하는 물론
- 유능한 잠재기능 인력의 건설업 취업 기피(인력난 가중)
- 건설업 해외 개방시 경쟁력 상실을 초래

\* 건설물량 증감에 따른 건설재해 발생 추이

( )는 전년대비 증감



## 2. 우리 건설업의 실태

### 가. 건설업의 특성

- 고용구조의 특수성
  - 일용 근로자들은 회사에 대한 소속감이 없고 공종에 따라 자주 교체
- 작업자체에 위험성 내재
  - 대형화, 고층화됨으로써 위험요소도 복잡 다양화

- 고소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동시 혼재작업, 대형건설 기계의 운용

- 각종 형태의 하도급제도 만연
  - 원·하도급 업체간의 안전에 대한 책임 소재 불분명
  -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성과급제 시행
- 기업주가 아직도 안전관리에 대한 선투자를 낭비요소로 인식
- '91년 당공단에서 지도·점검한 건설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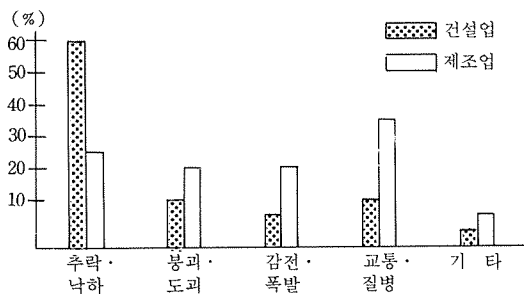
**안전관리 실태**

- 총 533개소중 양호한 현장은 전체의 7% 미만
- 규모에 따라 10개 공종안팎의 하도급 시행
- 안전관리조직은 대부분 구성, 운영실태는 아직 미흡
-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는 전보다 확대되었으나 대부분이 설치기준에 부적합

**나. 건설재해의 특성**

-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직·간접원인
  - 재해의 직접 원인중 인적요인은 대부분 불안정한 행동이며, 물적요인은 불안정한 상태에서 기인
  - 간접원인으로는 교육 불충분 등 교육적인 원인과 안전담당자의 미션임 등 안전관리조직의 불비등에서 기인
- 건설업과 제조업의 중대재해발생 형태를 비교
  - 추락, 낙하·비래재해 등 재래형 재해발생이 전체 건설재해의 60% 차지

**\* 중대재해 발생 형태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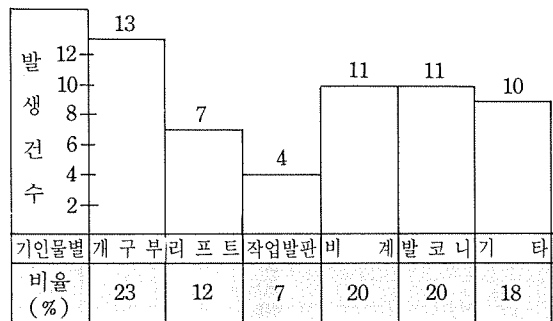
- 건설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재래형 재해예방에 치중해야 할 것임.

**3. 안전관리·담당임원게 드리는 말씀**

**가. 재래형 재해의 발생원인 제거에 중점**

- 우리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오는 추락, 낙하·비래 등 재래형 건설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에 관심과 투자를 당부
- '92년들어 4월말까지 당공단에서 100건의 건설 중대재해를 조사, 분석한 바
  - 3대 재래형 건설재해가 전체의 84% 차지 (추락 56건, 낙하·비래 15건, 붕괴 13건)
  - 동일한 종류의 재해가 전국적으로 반복해서 발생
  - 단순한 안전시설불비, 안전장구 미착용에서 기인

**\* 추락재해 기인물별 비율**



\* '92년 4월기준 공단에서 조사한 중대재해 통계

- 3대 건설재해가 발생하는 기인물과 발생원인을 정리하면
  - 추락재해의 대부분은 개구부, 리프트, 작업발판의 안전시설 불비
  - 낙하·비래재해는 자재 및 공구의 정리정돈 불량, 안전모 등 보호장구 미착용, 낙하물방지망 설치상태 불량
  - 붕괴·도괴재해는 지보공의 파괴, 토사면의 붕괴, 토류벽의 파손등으로 발생
- 따라서 추락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 벽면개구부의 바닥개구부등에는 안전난간과 덮개를 설치
  - 원치등의 조작은 전담자를 지정, 운영하며 신호수를 반드시 배치

- 비계에서의 작업은 반드시 안전한 작업 발판을 설치한 후 시행
- 외줄비계등에서의 작업은 반드시 보호장구 사용(안전벨트)

○ 낙하·비래재해예방을 위해서는

- 작업장소 주위는 일과 종료시는 물론 작업중에도 정리정돈 철저
- 상하에서 동시에 작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작업지휘자를 고정배치
- 설치된 낙하물방지망 등 안전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철저

○ 붕괴·도괴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 토사 굴착시는 작업이 단시간에 끝난다 해도 반드시 안전한 구배로 굴착.
- 굴착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작업 감시자를 배치
- 흙막이 토류판은 작업토압에 따라 재질, 구조, 이탈방지구조를 결정

나. 안전보건관리 체제의 확립

-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와 함께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의 구성이 필요
- 본사에는 안전관리 전담부서를 설치, 현장 안전관리를 관장
- 건설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
- 유해·위험작업에는 반드시 안전담당자를 지정배치

\* 안전관리자 선임수

공사 규모	안전관리자 선임수
10억원이상 50억원 미만	겸임 1인
50억원이상 300억원 미만	전담 1인
300억원이상	2인이상(공사금액 500억원이 추가될때마다 1인 증가)

- 안전관리 전담부서의 설치가 초기에는 경영에 부담이 되나, 결과적으로 기업경영에 더큰 이익이 보장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 본사 안전관리 조직의 전면 재편성을 기업주에게 강력하게 건의 (안전관리부서와 산재보상 업무 담당부서의 분리)
- 현장 안전관리가 능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보강과 예산지원 확대

본사 안전관리 전담부서 편성, 운영 참고

가. 조직의 구성

- 독립부서로서 전담임원 선임
- 사전예방 활동 중심의 안전관리 조직
- 사내 안전관리 위원회 운영의 강화

나. 조직의 기능

- 안전관리기획
- 사내 안전관리 시책 및 년도별 계획수립, 추진
- 재해발생 원인 분석과 대책수립
- 하도급업체에 대한 재해예방 실적 평가 및 관리
- 사전안전성심사 제도에 대한 관계자 교육 및 심사지원
- 안전관리 활동
- 안전교육자료 개발, 교육지원
- 현장별 안전점검표 작성, 보급
- 자체 안전점검 및 지도, 현장별 재해예방 실적평가 및 관리

다.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의 적정사용

-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공사금액의 약 1.5~3%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는 공사진행 중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비용으로서
- 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가 빠른 시일내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홍보와 규제가 병행되어야 하나 보다 근본적으로 행행의 안전관리비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 현실에 맞게 개선되어야 할 것임.
- 공사의 위험도별 세분화, 요율 세분화
- 별도계상 비용과 기본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계상기준 개정
- 공사종류별 사용기준과 원·하도급간의 적정배분 기준

**\* 산업안전공단에서 조사 분석한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에 따른 문제점**

- 공사분류 방법의 상이로 인하여 계상기준 적용시의 혼선을 초래
  - 안전관리비 계상기준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의한 분류
  - 건설공사 시행은 건설업법에 의한 공사분류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조 2항에 사업의 분류 방법은 경제기획원 장관이 고시하는 표준산업 분류표에 의한다라고 명시
- 건설공사 종류와 특성에 알맞는 별도계상 비용의 기준제시가 미흡
  - 현행 안전관리비 계상기준은 모든 건설공사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비용제시에 중점을 두었음
- 원·하도급간에 안전관리비 적정배분 사용기준이 미비
  - 공사의 위험도를 고려한 적정 지급 사용기준 마련
  - 원·하도급자간 공동 사용기준을 마련
-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 작성 의무 및 기준이 없음
  - 사용계획서의 미작성시의 벌칙조항과
  - 사용내역서의 확인만으로 타목적 사용여부의 판단이 곤란함.
- 또한 민간발주공사 안전관리비 계상을 저조

**라.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철저**

- 건설업은 공중에 따라서 수차에 걸쳐 하도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현장 전체의 단일 안전관리 체계를 구성하는데는 문제점과 어려움이 있음
  - 원도급업체는 안전관리 업무와 재해발생시의 모든 책임을 하도급업체에 일임
  - 하도급업체 또는 작업반장등은 안전시설, 안전수칙준수, 보호구착용, 안전교육 참여등이 작업능률의 저해 요인으로 인식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원청회사에게는 현장소장을 안전관리 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 현장의 각 하도급업체간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토록 하고, 하도급업체에게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토록 하는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함께 부여

- 원하도급업체간의 원활한 안전관리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 하도급업체는 총괄책임을 지고 있는 원청업체의 재해예방 시책에 적극 협력
  - 원도급업체는 하도급업체가 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함.

**\* 원·하도급업체의 책임**

- 원도급업체의 책임(산안법 제29조)
  -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의 협의체 구성 및

- 운영
- 현장 순회점검등 안전·보건관리
  -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지도와 지원
- 하도급업체의 책임(산안법 제23조)
- 사업을 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로서의 안전상의 조치 책임

취급방법등에 관한 내용을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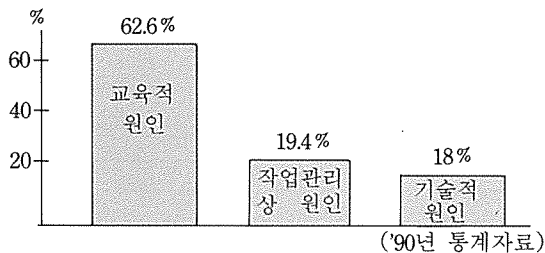
-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 작업내용 변경 근로자 대상
- 변경된 작업내용과 유해위험사항, 작업순서, 위험기구의 안전장치와 보호구의 성능 및 취급방법등에 관한 내용을 교육

마. 건설현장 안전보건교육 활성화

- 재해는 작업환경, 위험기계·기구등의 불안정한 상태와 근로자의 불안정한 행동이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발생
- 불안정한 상태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가 필요
  - 불안정한 행동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안전교육의 활성화가 요구

- 특별안전교육 :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할 작업종사자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이와 같은 작업종사자에게는 특별안전교육은 물론 안전담당자를 지정 배치토록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토록 하고 있으며
  - 특별교육을 받지 않은자를 당해 작업에 종사시킬 수 없도록 취업제한
  - 실제 앞서 건설공사의 3대 주요재해의 발생이 대부분 이와같은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서 발생

\* 건설재해중 관리적 원인에 의한 재해발생 구성비율



- 건설현장의 수시교육은 당해공사의 관리감독자(안전담당자)가 작업 시작전에 행하는 것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으면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임.

-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산안법 제31조, 규칙 제33조)
- 직무교육 :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대상 (신규교육, 보수교육)
  - 정기교육 : 전체근로자 대상(집체교육)
  - 수시교육 : 신규채용, 작업변경, 위험작업 종사 근로자 대상

- 참고로 공단에서 지도 점검을 수행한 결과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안전교육은 대부분의 현장에서 근로자를 한곳에 모아 놓고 하는 방식을 택하는데 건설현장 특성상 시간을 돈으로 생각하는 근로자에게 이와 같은 방법은 실효를 거두기 곤란

- 신규채용시 교육 : 당해 공중 신규 투입근로자 대상
- 작업내용과 유해위험사항, 작업순서, 위험기구의 안전장치와 보호구의 성능 및

-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수시교육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임.

-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건설재해의 심각성등에 관한 홍보는 물론 건설재해예방을 위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4. 맺는말

- 우리나라 산업재해의 선진국 수준 달성을 위해서는 건설업에서의 재해감소가 가장 절실한 실정임
  - 건설업 재해율이 아직은 전산업의 평균 재해율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 타 산업의 재해율은 매년 감소 현상을 보이는 반면 유독 건설재해만이 '90년이래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이와같은 재해증가와 함께 그동안 대폭 증가한 공사물량이 본격 시행되면서 위험 요소가 많은 공종이 진행중에 있어 중대재해의 발생이 한층 고조되고 있음.
- 앞에서 강조드린 바와 같이 '건설현장에서 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본사와 각 현장에 안전관리 조직을 편성하여 각각의 조직에서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확신함.

\* 년도별 재해율 추이

년	도	별	'85	'86	'87	'88	'89	'90	'91	비고
전	산	업	3.15	2.99	2.66	2.48	2.01	1.76	1.62	
건	설	업	3.14	2.81	2.27	2.06	1.42	1.54	1.61	

## 기 고 안 내

「建設安全技術協會誌」는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많은 기고로 本誌를 더욱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원고종류 : • 논문, 기술자료, 현장안전관리사례, 기타  
• 건설업계 및 각 유관기관 소식, 동정 • 제언

■ 매 수 : 제한없음

■ 보내실곳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58-1 남양빌딩 3층  
(사)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교육연구부  
전문위원 홍 종 민(앞)

- 채택된 원고에 한하여 소정의 교료를 드립니다. -